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

나.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다.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라.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1조)

아무쪼록 이번 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 산림문화·휴양의 진흥

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견인하고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